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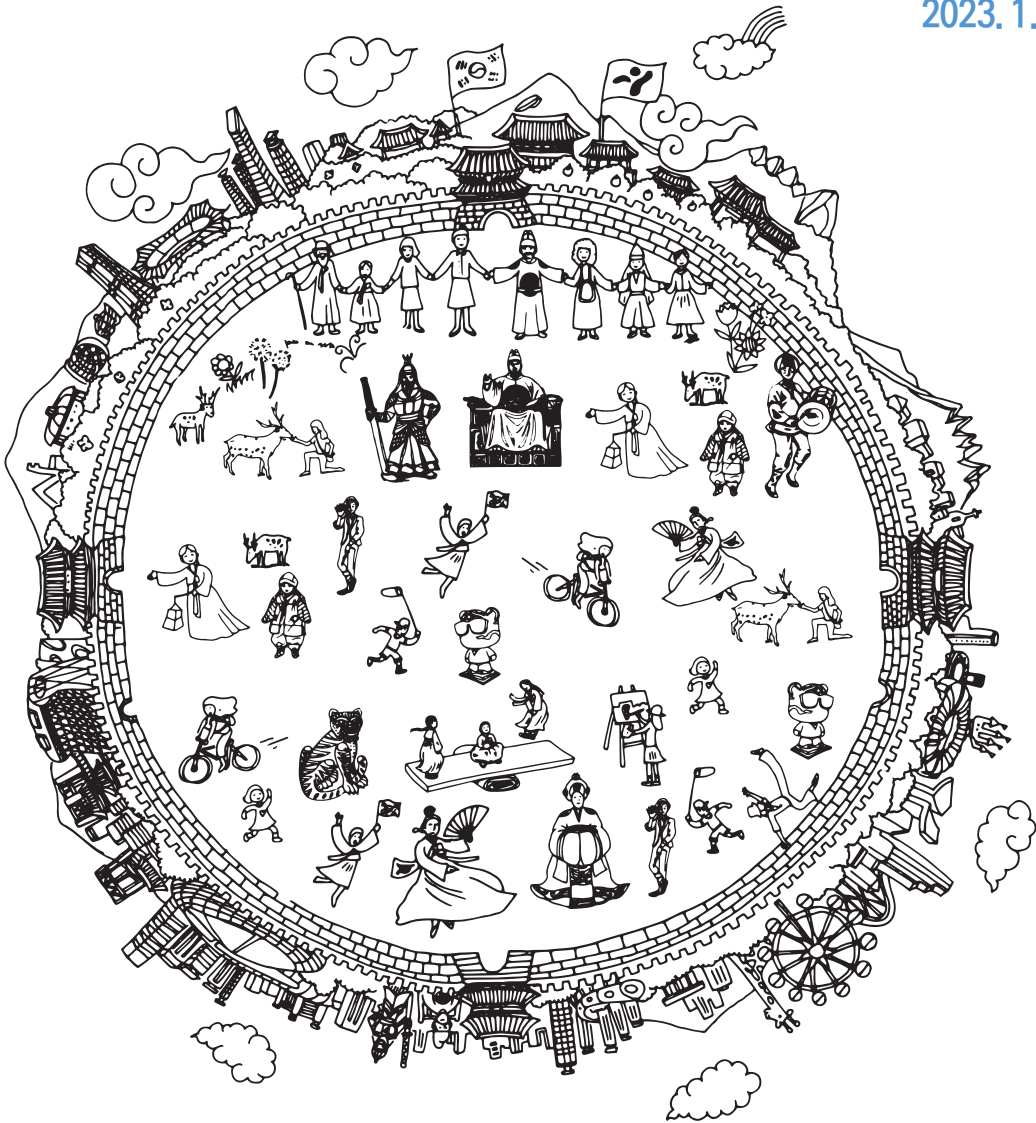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45호
2023. 1. 13.(금)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1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3-13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부서 신설 및 편제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 내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 으로 재편·신설(안 제10조제7항)

- 창의행정을 市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 시정연구 담당관을 창의행정 전담조직으로 재편·신설
- 홍보기획관 내 뉴디미어담당관의 ‘서울 창의상 운영’ 업무 이관
- 행정국 내 인력개발과의 ‘직원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업무 이관

나. 경제정책실 내 국제협력과를 경제일자리기획관 산하에서 경제정책실장 직속으로 편제(안 제11조제12항)

- 국제 협력기능 강화 및 신속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경제정책실장 직속 편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7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3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대응을 위한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대응을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

－ 행정 또는 시설8급 △1, 행정 또는 녹지8급 △1, 행정8급 △10

→ 행정5급 +1, 사서6급 +1, 시설6급 +1, 행정6급 +8, 사서7급 +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7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